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6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정희용・송언석・金炳旭

추경호 · 정진석 · 이채익

박덕흠 • 권명호 • 김용판

최춘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 19의 국내 재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하자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을 코로나 19확산 위험이 큰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

소상공인들은 올해 2~3월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당시 충격으로 급격한 매출을 감소를 경험했고 아직도 코로나 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2호에 따라 인하한 임대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할 것
 - 2.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인하한 임대료의 산정, 세액공제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임대사업을 하는경우해당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2호에 따라인하한임대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입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상가건물을 기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이하이조에서 "소상공인(이하이조에서 "소상공인"이라한다)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영업용사용을 목적으로임대한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 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인하한 임대료의 산정, 세액 공제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